

4.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(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) 에 의거한 권리금 회수의 요청은“임대인”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 “임차인“이 신규 임차인 ”경기석“ 과의 계약체결을 방해하여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귀책은 “임차인”에게 있는 것 이며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기간 또한 “임차인“의 귀책에 의해 발생 되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.

※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20년 12월 29일 조기 계약해지요청을 하였고,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구와도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중 그래도 어려운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려 2020년 3월~2021년 1월까지 총 22,680,000 원을 인하해 드렸습니다.

※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고통 분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

- 첨부-

2020년 8월 28일 , 12월 29일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 내용증명

2021. 8. 31
03079